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99호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예 규

- 예 규 제 8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 2

공 고

- 공 고 제 1 8 3 1 호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 차량 자진 인수통지 12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 고 제 1 8 3 4 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14
- 공 고 제 1 8 4 3 호 공인 신조 공고 25
- 공 고 제 1 8 4 7 호 지적제조사 지적확정예정통지서(구월2지구)반송에 따른 공시 27
송달 공고
- 공 고 제 1 8 5 4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30
- 공 고 제 1 8 5 6 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사업 실시계획 32
확인가를 위한 공고 및 협의
- 공 고 제 1 8 5 8 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34
- 공 고 제 1 8 6 2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 36
리행사 통보
- 공 고 제 1 8 6 3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40
- 보 건 소 공 고 제 7 6 호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42
- 보 건 소 공 고 제 7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44
- 보 건 소 공 고 제 7 8 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45

고 시

- 고 시 제 1 3 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46
- 고 시 제 1 3 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49
- 고 시 제 1 4 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67호선】사업 사업시행자 53
지정 및 실시계획고시
- 고 시 제 1 4 1 호 도시계획시설【녹지: 소래구역 완충녹지1, 2, 3】사업 54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고 시 제 1 4 2 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6

회 람								
----------------	--	--	--	--	--	--	--	--

예 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예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0월 25일

남동구 예규 제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위임한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심판법 제38조”를 “「행정심판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를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담당 부서장”을 “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		제○○○○-○○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요구서			
청 구 인	주 소 · 사 업 장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상 호 (법 인 명)		전 화 번 호				
과 세 예 고 통 지 기 관							
청 구 대 상	과세대상물건						
	통지사유(유형) 및 근거						
	세 목	○ ○ 세	과 세 표 준		세		
		○ ○ 세					
		○ ○ 세					
		○ ○ 세					
계			액				
청 구 경 위	통지를 받은날		청 구 취 지				
	청구서 접수일		시 접 수 일				
	보정요구송달일		처리기한연장일				
	처 리 기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 정 사 유 서(안)		요구의견 : [결정사유서(안)별첨]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어 상기와 같이 청구경위와 결정사유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남동구청장(세무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보

○○○○년 제○회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과세전적부 심사 결과(건수)

(단위 : 건수)

합 계	심 사 결 과			기 타
	채 택	불 채 택	보 류	

- 붙 임 :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 () 접수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 (032)453-○○○ /전송 032)453- /이메일 : ○○○○@ / 비공개

■ [별지 제4호서식]

의 안 번 호		제○○○○○-○○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대 리 인							
처 분 청								
과 세 물 건		소 재 지						
		종 수 별 량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과 세 표 준		세		세	
	고 지 일 자				목		액	
이의 신청 경위	처 분 청 의 통 지 를 받 은 날			보정요구일				
	이의신청일			보정이행일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 정 이 유		별 첨		

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호서식]

의 안 번 호		제○○○○○-○○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청 구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대 리 인							
처 분 청								
과 세 물 건		소 재 지						
		종 별 수 량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과 세 표 준		세		세	
	고 지 일 자				목		액	
심사 청구 경위	처 분 청 의 통 지 를 받 은 날		보정요구일					
	심사청구일		보정이행일					
심사청구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 정 이 유		별 첨			

위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심사청구 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7호서식]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남동구청장(세무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년 제○회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심의의결 결과(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 유형별		합계	의 결 결 과							기타
			소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각하 기각	보류	
계	요구									
	의결									
이의 신청	요구									
	의결									
심사 청구	요구									
	의결									

붙 임 :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 () 접수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 (032)453-○○○ /전송 032)453- /이메일 : ○○○○@ / 비공개

■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심의결과 통보서

심 의 결 과	안 건 번 호	안 건 명		결 과		
기 타 의 건 (소수의견)						
참 석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과 - (. .)호로 심의 요청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남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 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심 의 결 과	안 건 번 호	안 건 명		결 과		
기 타 의 건 (소수의견)						
참 석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과 - (. .)호로 심의 요청한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 변경)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남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세척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운영세척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올바르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별지 서식)
 - (현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개정) 남동구
 - (현행)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개정) 남동구청장
- 그 외 현행 운영세척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3조제7항)
 - 위원회의 간사를 (현행) 업무담당 부서장 → (개정) 업무담당 팀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831호

**불법 주정차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인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거 단속 및 견인되어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인수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 차량 자진 인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23. ~ 2019. 11. 12.(20일간)
3. 공고대상 : 불법 주정차 피견인 차량 인수통지 반송 1건 (붙임 대상차량 현황 참조)
4. 보관장소 :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 (☎032) 453-290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47)
5. 기타사항 :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미반환차량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분 (매각 또는 폐차)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 교통행정과 (☎032) 453-2897)

불법 주정차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공시송달 대상 현황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성명	위반장소	보관장소
1	43소52**	투싼	오**	간석1동 리더스타워 부근	남동구 견인보관소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834호

- 노인돌봄체계 개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 10. 21.

남 동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모집기관 : 2개 기관

- 1개 권역당 1개의 수행기관이 담당

* 권역은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권역 구분	1권역	2권역
관할지역	구월1~4동 간석1~2동	간석3~4동 만수4~6동
서비스관리자	2명	2명
비고	*특화사업 수행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 사업내용

- 기존 3가지 개별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단기가사) 등 서비스 통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 확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프로그램운영 등 욕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계약)기간 : 2020. 1. 1. ~ 12. 31. (평가 후 재위탁 가능)

○ 지원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 권역별 수행인력(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추후 조정 가능

2. 수행기관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자격요건)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 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아래 참고)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적용일: '20.1.1.)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 배점을 달리 함

* <예시>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예: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20.1.1.)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설기준)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①사무공간, ②상담공간, ③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확보필요 공간	기준	규모
① 사무공간	전용공간	서비스관리자 사무공간, 생활관리사 교육공간, 돌봄대상자 상담공간 등 확보 필수
② 상담공간	전용공간	
③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예-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건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사업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안내사항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 참여 가능

○ 수행기관이 신청한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권역 공모 참여 및 사업수행 가능

3. 신청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10.21.(월) ~ 2019.10.28.(월) (8일간)
- 접수기간 : 2019.10.29.(화) ~ 2019.11.1.(금) (4일간)
- 신청서 배부 : 인천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인천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32-453-5853)
- 신청자 :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 시. 별도 양식 없음) 1부
 -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인원 포함
 -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1권으로 편철(1권으로 편철하기 어려울 경우 2권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10부 제출
 - ※ 모든 작성서류는 A4용지에 한글로 작성하되, 제출서류 순서별로 편철하여 반드시 쪽번호를 기재하고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
 - ※ 모든 사본 자료는 원본 대조필 날인 제출
- 제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5. 선정기준 및 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기관으로 ①공공성을 갖추고, ②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관)이며 ③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되는 기관

□ 선정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 심사 일정은 추후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시설기준 등 정량적인 사항과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정성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 신청인은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 신청접수 순으로 제안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신청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사무국장 또는 과장급 이상)에 한함.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내용	배점(점)	비고
총점		100	
공공성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문요양급여 제공 유무 및 감축 또는 제한(유지) 계획 부분	20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자원 발굴 · 연계	30	
효과적인 사업수행	○ 시설기준 · 인력요건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기타 기관차량 및 사무기기 보유 여부	50	

- 수탁법인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수탁운영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결정
- 심사기준표에 의해 최소 기준점수(60점 이상)을 받은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권역별 최고득점이 동점일 경우, 공공성 >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수행능력 점수 획득 순으로 선정
- 수행기관 선정 후 법인사정 등에 의해 수탁 포기 또는 취소 시 심사결과에 의한 차점법인으로 수행기관 선정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신청 및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재공고시 단독신청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공모(재공고 포함)·심사 결과, 권역보다 적은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재공모 없이 구청장의 직권으로 권역을 축소·조정하여 수행기관 확정
※ 공모(재공모 포함)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 결과통보

- 발표일 : 2019.11.18.(월),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개별통지는 선정 기관에 한함.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수정) 서류제출은 불가하며, 남동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의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 위탁법인 선정·협약 체결 이후라도 이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점법인과 협의하여 위탁법인으로 선정함.(차점법인의 심사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인이 없을 경우 재공고)
- 신청 법인은 관계법령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의 책임으로 함.
-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함.

○ 기타 문의사항 남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453-5853)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사업명				
신청지역	시·군·구		권역	
신청법인	법인명	○○법인, ○○사회서비스원 등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주 소			
	전화번호		E-mail	
신청법인 운영 시설	시설명		시설장	
	시설종류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i>※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i>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_____) <i>※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i> ☐ 기타 시설(시설종류: _____) <i>※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i>		
	운영기간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붙임 1]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설립일			주무관청		
설립목적	○ ○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전체 기관 수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 수(장기요양기관 포함)		기관명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관 수		기관명	

[붙임 2]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 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설립된 기관이므로 후원연계 실적은 생략

연도	후원금액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후원내용	후원처
계				

첨부서류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필수 확보공간	위치	내용	확보 여부(✓)
1	사무공간	○○기관 ○○층	전용공간	☐
2	상담공간		전용공간	☐
3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번호	추가 확보공간	위치	내용	확보 여부(✓)
4				☐

첨부서류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제공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들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1499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기기 구입

○ 공인 최초 사용일 : 2019. 10. 21.

○ 신조 공인 수

- 신조 공인 : 4개

○ 신조 공인명 [간석2동] : 4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신 조 공 인	간석2동장인(간석2동통합 민원3)-중		고인체 2.4cm × 2.4cm
신 조 공 인	간석2동장인(간석2동통합 민원3)-형		고인체 2.4cm × 2.4cm

신 공 인	남동구청장인(간석2동통 합민원3)-종		고인체 3.0cm × 3.0cm
신 공 인	남동구청장인(간석2동통 합민원3)-횡		고인체 3.0cm × 3.0cm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847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10. 22.

남 동 구 청 장

- 공고장소 : 남동구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 공고기간 : 2019년 10월 22일 ~ 11월 6일(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453-6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확정예정조서

○ 구월2지구

번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		구월동	847	전	19.0		구월동	847	전	19.0	0	0	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11번길 ** (구월동)	폐문부재
2		구월동	836-1	전	2,172.0		구월동	836-1	전	2,172.0	0	0	박*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3, *****(관교동, **아파트)	이사불명
3		구월동	836-2	전	2,030.0		구월동	836-2	전	2,030.0	0	0	박*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3, *****(관교동, **아파트)	이사불명
4		구월동	836-3	전	2,800.0		구월동	836-3	전	2,800.0	0	0	박*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3, *****(관교동, **아파트)	이사불명
5		구월동	837	전	7,532.0		구월동	837	전	7,532.0	0	0	박*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3, *****(관교동, **아파트)	이사불명
6		구월동	840	전	1,088.0		구월동	840	전	1,088.0	0	0	박*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3, *****(관교동, **아파트)	이사불명
7		구월동	838-62	전	1,799.0		구월동	838-62	전	1,799.0	0	0	김*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72번길 **, *층(간석동)	수취인불명
8		구월동	838-1	전	1,013.0		구월동	838-1	전	1,013.0	0	0	정*정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23번길 *(내동)	폐문부재
9		구월동	838-70	전	1,159.0		구월동	838-70	전	1,159.0	0	0	노*의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223, ***동 ****호(관교동, **아파트)	수취인불명
10		구월동	838-1	전	1,013.0		구월동	838-1	전	1,013.0	0	0	정*희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23번길 *(내동)	폐문부재
11		구월동	838-5	전	1,414.0		구월동	838-5	전	1,414.0	0	0	조*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382번길 ** (용현동)	폐문부재
12		구월동	829-3	전	1,481.0		구월동	829-3	전	1,481.0	0	0	이*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동 ****호 (간석동, *****(아파트))	수취인불명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종전 토지					확정예정 토지					증감 면적 (㎡)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의견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의견서작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접수	→	검토	→	경계(면적) 조정	→	임시경계점표지설치
처리기관 : 남동구								

210mm×297mm[백상지(80g/㎡)]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185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10.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10.23. ~ 2019.11.06.
3. 공고대상 : 등록번호판 없는 차량 및 이륜차 8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 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44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예곡중앙로 156번길 5-33(인도변)	2019.10.19.이후	견인예정	
2	2019-0045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용천로176번길90	2019.10.28.이후	견인예정	
3	2019-0045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고잔로129번길 (버스정거장 옆)	2019.10.28.이후	견인예정	
4	2019-0045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 742-1 (도시관리공단 제5주차장입구)	2019.11.04.이후	견인예정	
5	2019-0045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남촌로 122번길 62-6(청도빌라)	2019.11.04.이후	견인예정	
6	2019-0045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 679-1 SJ디자인호텔 뒤	2019.11.04.이후	견인예정	
7	2019-0046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755-5 (인도변)	2019.11.10.이후	견인예정	
8	2019-0046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인하로 485 뉴코아아울렛(구월점)	2019.11.11.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고 제2019-1856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5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
 - 명 칭: 남동구청사 담장 허물기사업
3. 사업규모: A=1,22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202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계	잔여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소유자	주소	
1	만수동	1052	도	2,653.3	1,225	1,225	1,428.3	인천광역시		
소 계				2,653.3	1,225	1,225	1,428.3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5)

9.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858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35호(2018. 3. 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 영업권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 가. 사 업 명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사업시행구역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32,368.4㎡)
- 다. 사업시행자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낙인
- 라. 공고기간 : 2019년 10월 24일 ~ 2019년 11월 11일
- 마. 송달대상 및 내용 : 별첨 내역참조
- 바. 협의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 이상
- 사. 협의장소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34, 3층(신암동) ☎ : 053-263-8101)
- 아.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와 당사자 간의 직접협의(기간 내 서면, 구두, 전화통지로도 협의가능), 협의 성립시 현금 직접보상
- 자.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보상협의 후 추후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032-424-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송달대상 및 내용

연번	동 명	소재지	구분	지 목 (물건의종류)	이용상황 (구조)	면 적	소유지분	송 달 지	성 명	권리의 종류
1	간석동	899-002	토지	대	대	429.20	565/1428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137-★(십정동)	이★석	소유권
2	간석동	900-019	토지	대	대	55.70	22.55/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 번길 111-18, 10★호 (간석 동, 명성아트빌)	구★회	소유권
		900-147	토지	대	대	161.30	22.55/217			
		900-019 900-147	물건	다세대주택(101 호)	철근콘크리트	48.76	1			
3	간석동	900-141	토지	대	대	188.9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 번길 ★(간석동)	정★진	소유권
		900-141	물건	소매점(지1) 외	철근콘크리트조	489.81				
4	간석동	900-151	토지	도	도	2.0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 번길 111-1★, 402호 (간석 동, 명성아트빌)	성★모	소유권
5	간석동	900-006	영업	이전비	라운익스프레스	1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900-★, 라운익스프레스	박★연	영업권
6	간석동	900-002	물건	주택, 근생(1층) 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61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 번길 111-★(간석동)	오★비	전세권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86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10.24. ~ 2019.11.07.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11.07.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5032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

2019. 10.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678	**소5032	제*시스 (GE**SIS)	(구월3동 1370-5) 문화로89번길 39 앞	김*영	83****	서울특별시 구*구 가**로**라길 **** (구*동)	2019.03.07	기전산업(株)폐차사업소	032-814-4400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소유 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18-00678	**소5032	제*시스 (GE**S IS)	김*영	83****	서울특별시 구*구 가**로**라길 ***-*(구*동)	압류	서울시 구로구 징수과	2018.11.14	징수과-24710	지방세체납
						압류	구로구	2019.01.21	자동차관리과-2275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811-002858
						압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019.03.20	교통행정과-3987	주정차위반과태료[2018-11-100986]
						압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019.03.20	교통행정과-3987	주정차위반과태료[2018-11-101135]
						압류	금천구	2019.04.26	세무1과세외-0426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201812-000263(대체 : 시설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
						압류	서울구로경찰서	2019.04.29	2019D1127003427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770181316182)
						압류	한국도로공사	2019.05.29	한국도로공사 수도권-1895(2019.05.2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저당	(주)한빛자산관리대부 *저당을부번호 : 2820-2018-003664	2018.06.14	10,500,000	
						압류	서울 강북구	2019.06.05	주차관리과-13607	주정차위반과태료[2018-12-101362]
						압류	영등포구	2019.07.03	징수세외-11672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201810-001961(대체 : 55소50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압류	서울 강북구	2019.07.09	주차관리과-16363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1-101294]
						압류	서울 강북구	2019.07.09	주차관리과-16363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1-101497]

	압류	서울 강북구	2019.07.09	주차관리과-16363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1-101908]
	압류	서울 강북구	2019.07.09	주차관리과-16363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1-101959]
	압류	구로구	2019.07.29	자동차관리과-26585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905-001097
	압류	서울 강북구	2019.09.11	주차관리과-22055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3-100511]
	압류	구로구	2019.09.19	자동차관리과-31911	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201907-001269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86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10.24. ~ 2019.11.07.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11.07.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55소5032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

2019. 10.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678	55소5032	제네시스 (GENESIS)	(구월3동 1370-5) 문화로89번길 39 앞	김진영	83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0라길 14-1 (구로동)	2019.03.07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6호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아 래 -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9.10.21. ~ 2019.11.5.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 동법 제22조 적용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4. 당사자 및 과태료처분 예정사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미용업	미미헤어샵	김*숙	간석로72번길 20 (간석동)	2018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기한내 납부시 16만원)
건물위생 관리업	하우징 코스메틱	안*양	백범로 475, 202호(간석동)	2018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기한내 납부시 16만원)

5.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2019.11.5.까지 남동구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으로 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담당 구아름 ☎032-453-263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11. 07.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10. 23. ~ 2019. 11. 0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식품제조 가공업	1999- 0199583	김가네	함○상	인천시 남동구 장승로 34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6.30	2019.11.07
식 품 소분업	1999- 0199589	김가네	함○상	인천시 남동구 장승로 34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6.30	2019.11.07
식품제조 가공업	2017- 0199008	(주)엠푸드시스템	이○진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93-12, 3층 (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4.30	2019.11.07
식품제조 가공업	2014- 0199812	동우F&B	김○열	인천시 남동구 장자북로 29, 1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0.11	2019.11.07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11. 06.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10.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8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0.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24. ~ 2019. 11. 7.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제과점	1993-0199277	하이몬드제과	조○균	석정로 567 (간석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처 분 일 : 2019. 10. 08.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처분
 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02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02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략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략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 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02 (구월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구월로의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10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 20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33 (간석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10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1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3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9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408 (도림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10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40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08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8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98 (수산동)	20091116	아홉개의 우물이 있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10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수골로 9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8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고개로719번길 52 (고잔동)	20091116	영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영고개로719번길 5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2를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0-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0 (구월동)	20091116	인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하로521번길 2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02 (구월동)	2019.10.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9-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2-5 (고잔동)	2019.10.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2-9 (고잔동)	2019.10.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0-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0 (구월동)	2019.10.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33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33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95, 295-8, 29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33 (운연동)	20091116	음실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0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음실로 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3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17 (구월동)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60m지점에서 오른 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776번길 1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7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33 (운연동)	2019.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37 (운연동)	2019.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고 제2019-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67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6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0.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61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67호선)
 - 명 칭: 고잔동 소1-67호선 확·포장공사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소로 1-64호선 L=88.0m, B=9.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산영 대표 이권구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9, 3동 709호 (송도동, 비알씨)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0. 09. 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고잔동 761	잡	1,336	283.9	남동구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소 계			1,336	283.9						

- 법 제99조예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6항과 같음
-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141호

도시계획시설 【녹지: 소래구역 완충녹지1, 2, 3】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 【녹지: 소래구역 완충녹지1, 2, 3】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0.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사업
 - 명 칭: 논현동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1, 2, 3) 조성공사
3. 사업규모(변경)
 - 완충녹지1: $A=1,553\text{m}^2 \rightarrow A=1,558\text{m}^2$
 - 완충녹지2: $A=1,850\text{m}^2 \rightarrow A=1,872.9\text{m}^2$
 - 완충녹지3: $A=2,686\text{m}^2 \rightarrow A=2,677.8\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창하]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2018.09.07. ~ 2019.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 지 조 서 (기정 ·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논현동)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관 계	비고
					완충녹지1	완충녹지2	완충녹지3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계(기정)				6,089	1,553	1,850.0	2,686						
완충녹지1		소계(변경)			1,558								
1	66-70	810-3	도	공	2.0	947.9		인천광역시					
2	66-92		잡		942.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3	66-94		잡		609.0		610.1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완충녹지2		소계(변경)				1,872.9							
4	66-67	810-2	도	공	30.0	1,872.9		인천광역시					
5	66-68		도		7.0			인천광역시					
6	66-69		도		113.0			인천광역시					
7	66-87		잡		28.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8	66-88		잡		588.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9	66-91		잡		1,078.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10	66-108		도		6.0			인천광역시					
완충녹지3			소계(변경)						2,677.8				
11	66-89	810-1	잡	공	1,340.0		2,677.8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12	66-106		잡		1,279.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13	66-110		잡		67.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42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Ⅲ. 도시관리계획(소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①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218,947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18,94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1,062	6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7,517	21.6	
	제3종일반주거지역	53,152	24.5	
	준주거지역	40,393	18.4	
일반상업지역		73,189	33.3	
자연녹지지역		4,696	2.2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일원	171,979 (73,668)	-	-	-	-

주1)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2	7,041	123,766	5	3,059	58,541	13	2,280	30,732	4	1,702	34,493
기정	대로	2	1,413	37,048	-	-	-	1	343	10,098	1	1,070	26,950
기정	중로	7	3,994	73,401	2	2,763	55,581	4	734	11,010	1	497	6,810
기정	소로	13	1,634	13,317	3	296	2,960	8	1,203	9,624	2	135	733

주)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74	30~34	보조 간선	343	논현동 111-407 (논현2지구계)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2007-53호	
기정	대로	3	76	25~31	집산 도로	1,070 (583)	대3-23	중1-90	일반 도로	인고 제2002-310호	
기정	중로	1	90	20	국지 도로	180	중1-302	대3-76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 간선	2,583 (296)	소래, 논현지구 지구계남동측	대1-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58	15~18	국지 도로	127	중(소래) 3-2	대3-7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 도로	390 (128)	대3-76	논현동 21-2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2	110	15~18	국지 도로	110	대3-76	중(소래) 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소래1	18	국지 도로	107	대3-76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중로	3	소래2	12~16	국지 도로	497	대2-74	중1-302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0	대3-76	소1-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50	대3-76	소1-4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4	9.5~10	국지 도로	232	소2-1	대2-74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 도로	127	중2-109	대2-74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1997-23호	
기정	소로	1	소래3	10	국지 도로	14	중1-302	논현동 111-252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0	대로3-76	109-8호 (소래초교)	일반 도로	인고 제1994-208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0	대3-76	소1-8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40	중1-90	중(소래) 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소래4	8	국지 도로	112	소1-3	소1-4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5	8	국지 도로	100	중2-58	소2-9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 ()는 구역 내 사항임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기정	소로	2	소래6	8	국지 도로	79	소2-9	소(소래) 2-7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7	8	국지 도로	204	소2-9	소(소래) 3-2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소래8	4	특수 도로	31	중1-302	소(소래) 2-7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04	논현동111-10	중1-302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2017-75호	역사 공원 중복 결정

※ ()는 구역 내 사항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 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111-36 일원	73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9 일원	4,444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3,387	인고 제2011-225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주)주차장③은 소공원① 전체 4,628㎡ 중 3,387㎡ 중복

나) 공간시설 (변경)

(1)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 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	일반 광장	남동구 논현동 111-329 일원	864	인고 제2011-225호	

(2)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 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	소공원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4,628	인고 제2011-225호	지하주차장③, 우수저류조① 일부 중복결정
기정	①	-	역사 공원	남동구 논현동 111-13 일원	4,264	인고 제2011-225호	소로 3-10호선 중복결정

주1) 소공원①은 지하주차장③ 3,387㎡ 전체중복, 우수지① 전체 1,639㎡ 중 717㎡ 중복

주2) 역사공원①은 소로3-10호선 634㎡ 전체 중복

(3)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논현동 66-94 일원	남동구 논현동 810-3번지 일원	1,553	증) 5	1,558	인고 제2011-225호	
변경	②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논현동 66-91 일원	남동구 논현동 810-2	1,850	증) 22.9	1,872.9	인고 제2011-225호	
변경	③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논현동 66-106 일원	남동구 논현동 810-1	2,686	감) 8.2	2,677.8	인고 제2011-225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 지	◦ 신규지번 부여 ◦ 면적 증가 5㎡ - 1,553㎡ → 1,558㎡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②	녹 지	◦ 신규지번 부여 ◦ 면적 증가 22.9㎡ - 1,850㎡ → 1,872.9㎡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③	녹 지	◦ 신규지번 부여 ◦ 면적 감소 8.2㎡ - 2,686㎡ → 2,677.8㎡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4)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75 일원	322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70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154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④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87 일원	271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⑤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60 일원	183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남동구 논현동 66-98 일원	1,639	인고 제2012-324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주) 유수지①은 소공원① 전체 4,628㎡ 중 717㎡ 중복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하수도	남동구 논현동 66-104 일원	494	인고 제2011-225호	오수중계 펌프시설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계	32,753	-			32,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 1BL	10,236	1	109-202대	160			
		2	109-200답	320			
		3	109-198대	456			
		4	109-158대	510	■ 공동개발 지정		
			109-159답	20			
			소계	530			
		5	109-157대	623			
		6	109-156대	570			
		7	109-165대	227			
		8	109-167대	225			
		9	109-164대	174	■ 공동개발 지정		
			109-169대	140			
			소계	314			
		10	109-163대	182	■ 공동개발 지정		
			109-170대	139			
			소계	321			
		11	109-99대	331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2	109-103답	331			
		13	109-100답	188	■ 공동개발 지정		
			109-151답	142			
			소계	330			
		14	109-152답	189	■ 공동개발 지정		
			109-220답	130			
			소계	319			
		15	109-153답	214	■ 공동개발 지정		
			109-221답	129			
			소계	343			
		16	109-166대	683			
		17	109-97답	1,455			
		18	109-69잡	9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9	109-70대	198			
		20	109-71대	120			
		21	109-72대	205			
22	109-73대	600	■ 공동개발 지정				
	109-215대	398					
	111-26대	122					
	111-27대	78					
	소계	1,198				※ 필지수 : 4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1BL (계속)	(10,236)	23	111-29대	108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55대	10			
			소계	118			※ 필지수 : 2개
		24	111-28대	208	■ 공동개발 지정		
			111-32전	23			
			111-453대	10			
			111-459전	1			
			소계	242		※ 필지수 : 4개	
		도로	111-14도	114	※ 비건축 부지		
			109-159답	2			
			109-160도	7			
			109-161도	7			
			109-162답	280			
			109-168도	62			
			111-467도	7			
			111-468도	10			
			111-477도	26			
		111-478도	3				
		소계	518	※ 필지수 : 10개			
주 2BL	5,031	1	109-19주	857			
		2	109-35대	457			
		3	109-94잡	742			
		4	109-232잡	131			
		5	109-37대	432			
		6	109-38대	146	■ 공동개발 지정		
			109-40대	1,557			
			109-182답	5			
			109-244대	18			
		소계	1,726	※ 필지수 : 4개			
		7	109-177답	364			
		8	109-42대	159	■ 공동개발 지정		
			109-181전	2			
소계	161		※ 필지수 : 2개				
9	109-101답	161					
주 3BL	2,007	1	109-49대	110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2	109-50대	120			
		3	109-48대	108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4	109-140대	135			■ 공동개발 지정
			109-246대	17			
			소계	152	※ 필지수 : 2개		
		5	109-51대	147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	109-53대	99			
		7	109-52대	272			
		8	109-56대	46	■ 공동개발 지정		
			110-1대	230			
			소계	276		※ 필지수 : 2개	
		9	109-54대	39	■ 공동개발 지정		
			111-96대	182			
			소계	221		※ 필지수 : 2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3BL (계속)	(2,007)	10	109-57대	45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4개		
			109-58답	36			
			110-3대	165			
			110-5대	41			
			소계	287			
		11	109-55대	1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11-97대	177			
			111-98대	28			
			소계	215			
주 4BL	3,948	1	109-107답	25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09-235대	326			
			109-172답	48			
			소계	399			
		2	109-144대	41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80대	20			
			소계	437			
		3	109-145대	433			
		4	109-146대	547			
		5	109-142답	31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09-146대	41			
			109-147대	644			
			소계	716			
		6	109-58답	29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09-59답	271			
			소계	300			
		7	110-2대	31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5개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8	111-101대	112			
			111-102대	196			
			111-103대	23			
			111-3도	5			
			111-5도	1			
		9	소계	337			
			111-98대	72			
			111-99대	258			
			111-100대	135			
		소계	465				
주 5BL	4,714	1	109-118대	10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35답	7			
			소계	111			
		2	68-2대	126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6개		
			68-17대	110			
			68-18대	149			
			68-84전	1			
			109-36대	431			
			109-176대	739			
			소계	1,556			
		3	68-81전	13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68-82전	415			
			68-83전	670			
			소계	1,22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5BL (계속)	(4,714)	4	66대	405	
		5	66-44대	331	
		6	68-23대	20	■ 공동개발 지정
			68-78대	167	
			68-79대	1	
			소계	188	
		7	68-74차	157	■ 공동개발 지정
			68-75종	497	
			소계	654	
		도로	68-19도	207	※ 비건축 부지
109-122도	40				
소계	247				
주 6BL	6,817	1	68-20종	2,380	■ 공동개발 지정
			109-39전	27	
			109-122도	24	
			109-125답	4	
			소계	2,435	
		2	68-20종	46	■ 공동개발 지정
			68-38전	91	
			소계	137	
		3	68-23대	60	■ 공동개발 지정
			68-80대	131	
			소계	191	
		4	66-39대	379	
		5	68-24전	345	
		6	68-25전	198	
		7	68-39전	266	
		8	68-40전	317	
		9	68-26전	66	■ 공동개발 지정
			68-33전	250	
			68-37전	115	
			68-50도	4	
			소계	435	
		10	109-149대	751	
		11	68-77대	1,214	
		도로	68-19도	149	※ 비건축부지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942	25,998.9	-			25,942	25,998.9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 1BL	25,942	25,998.9	1	66-3잡	810대	2,413	25,998.9	■ 공동개발 지정(삭제)
				66-87잡		245		
				66-18잡		23,284		
				소계			25,942	25,998.9

※ 금회 면적변경은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임

다)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계	27,523	-		27,523	준주거지역		
준 1BL	6,286	1	111-264대	20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7Lot ② 준1BL 8~9Lot ③ 준1BL 10~11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18Lot
		2	111-251대	237			
		3	111-245대	200			
		4	111-246대	201			
		5	111-247대	200			
		6	111-248대	201	■ 공동개발 지정		
			111-249대	209			
		소계		410	※필지수 : 2개		
		7	111-250대	210			
		8	111-8대	356			
		9	111-11대	171	■ 공동개발 지정		
			111-396대	76			
		소계		247	※필지수 : 2개		
		10	111-154대	293			
		11	111-259대	297			
		12	111-263대	456			
		13	111-261대	603			
		14	111-256대	580			
15	111-257대	478					
16	111-258대	454					
17	111-158대	273					
18	111-260대	588	※ 비건축부지				
준 2BL	8,939	1	111-209대	22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2~3Lot ② 준2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	111-215대	241			
		3	111-192대	277			
		4	111-254대	203			
		5	111-295대	202			
		6	111-20대	877	■ 공동개발 지정		
			66-18잡	161			
		소계		1,038	※필지수 : 2개		
		7	111-210대	206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8	111-220대	206			
		9	111-211대	206			
		10	111-221대	207			
		11	111-212대	206			
		12	111-222대	206			
		13	111-213대	252			
		14	111-216대	420			
		15	111-217대	427			
		16	111-225대	352			
		17	111-226대	352			
		18	111-227대	352			
		19	111-255대	458			
20	111-230대	601					
21	111-265대	428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2BL (계속)	(8,939)	22	111-229대	48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3	111-228대	544			
		24	111-214도	405	※ 비건축부지		
		25	111-231도	436	※ 비건축부지		
준 3BL	2,920	1	111-152대	29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2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3Lot
		2	111-196대	1,407			
			112-1대	181	■공동개발 지정		
			112-2도	63			
			소계	1,651	※필지수 : 3개		
		3	111-56대	2			
			111-161대	519			
			111-173도	225	■공동개발 지정		
			111-174대	8			
			111-176대	223			
			소계	977	※필지수 : 5개		
준 4BL	3,498	1	111-300대	7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3Lot ② 준4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5Lot
		2	111-161대	24			
			111-173도	64			
			111-176대	1	■공동개발 지정		
			111-179대	383			
			111-235대	155			
			소계	627	※필지수 : 5개		
		3	111-173도	130			
			111-176대	4			
			111-180대	343	■공동개발 지정		
			111-235대	82			
			소계	559	※필지수 : 4개		
		4	111-56대	74			
			111-169대	183			
			111-170대	658	■공동개발 지정		
			111-173도	83			
			111-176대	73			
			소계	1,071	※필지수 : 5개		
		5	111-57대	157			
			111-166대	9			
			111-171대	34			
			111-172대	105	■공동개발 지정		
			111-174대	166			
			111-175대	26			
			소계	497	※필지수 : 6개		
준 5BL	5,629	1	111-183대	1,718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2	111-301창	1,316			
			111-238대	2	■공동개발 지정		
			소계	1,318	※필지수 : 2개		
		3	111-197대	13			
			111-239대	63			
			111-241대	28			
			111-242대	6	■공동개발 지정		
			111-243대	63			
			111-301창	107			
			111-344창	1,427			
			소계	1,707	※필지수 : 7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5BL (계속)	(5,629)	4	111-232대	41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5	111-244대	133			
		6	111-233대	110	※ 비건축부지		
		7	111-236도	228	※ 비건축부지		
준 6BL	251	1	111-182대	249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111-330대	2			
			소계	251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계	53,077		-	53,077	일반상업지역	
상 1BL	1,524	1	111-9대	24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22대	11		
			111-23대	502		
			111-31대	26		
			111-137대	141		
			111-406전	40		
			111-435대	1		
			111-437대	2		
			111-439대	7		
			111-457전	5		
			소계	759	※필지수 : 10개	
		2	111-24대	337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3개
		3	111-36철	89		
			111-54전	308		
			111-55대	31		
			소계	428		
상 2BL	9,141	1	66-1제	348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6-58제	5		
			111-38대	258		
			111-39대	22		
			111-40대	311		
			111-41대	278		
			111-42대	374		
			111-108도	5		
			111-111대	58		
			111-112대	53		
			111-113도	56		
			111-114대	188		
			111-115대	185		
			111-116대	112		
			111-117대	136		
			111-118대	136		
			111-119대	15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2BL (계속)	(9,141)	1	111-120대	46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121대	274		
			111-122대	238		
			111-441대	15		
			111-443대	14		
			66-59도	10		
			소계	3,274		
		2	66-1제	278	■ 공동개발 지정	
			111-43대	104		
			111-44대	390		
			111-45대	75		
			111-123대	334		
			111-124대	516		
			111-125대	552		
			111-126대	300		
			111-127대	145		
			111-202대	40		
			111-203대	65		
			111-204대	57		
			111-205대	121		
			111-322대	95		
			소계	3,072		
		3	66-5대	2,794	■ 공동개발 지정	
			66-60도	1		
			소계	2,795		
상 3BL	18,385	1	66-41제	232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7대	18		
			111-48대	103		
			111-49대	165		
			111-50대	188		
			111-51대	40		
			111-52대	162		
			111-129대	44		
			111-130대	15		
			111-131대	165		
			111-132대	73		
			111-133대	175		
			111-135대	109		
			111-201대	290		
			111-319대	5		
			111-325대	6		
			111-326대	120		
			소계	1,910		
		2	66-41제	461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45		
			111-53대	327		
			111-136대	99		
			111-159대	61		
			111-345대	105		
			111-346대	47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3BL (계속)	(18,385)	2 (계속)	111-347대	101	■ 공동개발 지정 (계속)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348도	46		
			111-349대	189		
			111-350대	417		
			111-368대	150		
			소계	2,048		
		3	66-41제	335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164		
			111-160대	60		
			111-354대	104		
			111-355대	39		
			111-356대	294		
			111-357대	234		
			111-362대	226		
			111-363대	240		
			111-364대	60		
			111-365대	73		
			111-366대	61		
			111-367대	83		
			111-369도	130		
		소계	2,103	※필지수 : 14개		
		4	111-149대	61	■ 공동개발 지정	
			111-302대	5		
			111-358대	784		
			111-393대	62		
			소계	912		
		5	66-19도	15	■ 공동개발 지정	
			111-149대	15		
			111-303대	295		
			111-359대	319		
			111-393대	2		
			소계	646		
		6	66-41제	398	■ 공동개발 지정	
			111-360대	123		
			111-361대	276		
			111-475대	226		
			111-476대	85		
			소계	1,108		
		7	66-24잡	9,658		
상 4BL	6,797	1	111-11대	3,945	-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소계	3,945		
		2	111-151대	1,113	■ 공동개발 지정	
			111-155대	1,739		
			소계	2,85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상 5BL	5,833	1	111-143대	2,745	■공동개발 지정 -상5BL+상6BL ※전체 공동개발 시에만 가능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152대	264			
			소계	3,009			
		2	111-147대	1,048	■공동개발 지정		
			112-2도	3			
			112-3대	515			
			소계	1,566			
		3	111-73대	7	■공동개발 지정		
			111-74대	17			
			111-144대	572			
			111-145대	580			
			111-269대	25			
			111-270대	57			
			소계	1,258			
상 6BL	2,519	1	111-71대	127	■공동개발 지정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가구간 공동개발 권장
			111-72대	35			
			111-74대	25			
			111-75대	99			
			111-76대	278			
			111-77대	111			
			111-146대	257			
			소계	932			
		2	111-37대	80	■공동개발 지정		
			111-71대	218			
			111-72대	237			
			111-146대	273			
			소계	808			
		3	111-37대	473	■공동개발 지정		
			111-61대	97			
			111-62대	63			
			111-72대	26			
			111-146대	37			
			111-166대	83			
			소계	779			

주1) 상5BL, 상6BL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내공지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함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7BL	8,936	1	111-70	63	■공동개발 지정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79대	142		
			111-80대	281		
			111-81대	267		
			111-82대	215		
			111-83창	268		
			111-84대	274		
			111-85대	112		
			111-86대	225		
			111-89대	61		
			111-90대	73		
			111-91대	69		
			111-92대	79		
			111-93대	56		
			111-94대	112		
			111-148대	255		
			111-398대	225		
			111-423도	312		
			소계	3,089	※필지수 : 18개	
		2	111-58대	188	■공동개발 지정	
			111-59대	240		
			111-63대	31		
			111-64대	106		
			111-65대	69		
			111-66대	340		
			111-67대	370		
			111-68대	364		
			111-69대	317		
			111-70대	163		
			111-138대	33		
			111-139대	34		
			111-140대	90		
			111-141대	106		
			111-142대	315		
			111-167대	256		
			111-193대	2		
			111-194도	127		
			111-374대	60		
			111-431대	78		
			소계	3,289	※필지수 : 20개	
		3	111-162대	357	■공동개발 지정	
			111-163대	501		
			111-164대	456		
			111-167대	31		
			111-193대	789		
			111-253대	189		
			111-431대	235		
			소계	2,558	※필지수 : 7개	※획지수 : 3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허용용도(A)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1	주 1~6BL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기정	A2	공동 1BL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기정	A3	준 1~2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 (1~11Lot) 준 2BL (1~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 (1~11Lot) 준 2BL (2~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준 1~2BL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2BL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판매시설 중 상점 ○ 주거복합건축물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4	준 3~5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기정	A5	준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중 상점
기정	A6	상 1BL, 상 4~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업무시설
기정	A7	상 2~3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업무시설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8	상 7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 주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 주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 주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 주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 주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 주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 주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장용도(B)

○ 권장용도 지정을 통하여 구역특성 반영 적극 유도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B1	주 1BL	○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기정	B2	주 2BL ~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설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3) 불허용도(C)

○ 도시형생활주택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C1	전 체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 고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80% 이하	

- 주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 80% 적용.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0% 적용
-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2) 용적률

○ 개발 규모와 연계한 용적률 계획 수립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반시설 의무부담비율 (순부담)	비 고
주 1BL ~ 6BL		200%	230%	250%	-	
공동 1BL		180%	200%	250%	43.1%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1~6Lot) 준 3BL(1Lot) 준 5BL(4~5Lot)	200%	240%	-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170%	200%	-	-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300%	350%	400%	-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5BL(2~4Lot)	300%	350%	400%	5% 이상	
	준 3BL(1~2Lot) 준 4BL	300%	350%	400%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200%	240%	300%	10% 이상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2, 5BL	300%	400%	500%	12% 이상	
	준 3, 4BL	300%	400%	500%	-	
준 6BL		200%	240%	-	-	
상 1BL		200%	230%	250%	-	
상 2 BL	1종일반주거→일반상업	200%	230%	250%	-	기존용적률은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일반상업	700%	800%	1,000%	-	
상 3 ~ 6BL		700%	800%	1,000%	-	
상 7BL		350%	420%	500%	7.5%이상 (개설부담)	

주1) 준1:2BL을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음(적용 용적률 : 기준 200%, 허용 240%, 상한 300%)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반시설의무부담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3-5-3 규정 적용(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상2BL, 상3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륜(%)	비 고
~ 10% 미만	1,000%	
10% 이상 ~ 20% 미만	950%	
20% 이상 ~ 30% 미만	900%	
30% 이상 ~ 40% 미만	850%	
40% 이상 ~ 50% 미만	800%	
50% 이상 ~ 60% 미만	750%	
60% 이상 ~ 70% 미만	700%	
70% 이상 ~ 80% 미만	510%	

- 준주거지역 (준1BL, 준2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륜(%)	비 고
~ 10% 미만	500%	
10% 이상 ~ 20% 미만	480%	
20% 이상 ~ 30% 미만	460%	
30% 이상 ~ 40% 미만	440%	
40% 이상 ~ 50% 미만	420%	
50% 이상 ~ 60% 미만	400%	
60% 이상 ~ 70% 미만	380%	
70% 이상 ~ 80% 미만	330%	
80% 이상 ~ 90% 미만	300%	

- 인센티브 계획

구분	완화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친환경 건축물	옥상조경(권장)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 -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3	위치 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 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규제)	기준용적률 × 0.03	

주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한다.

주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 공동 1BL은 기반시설의무부담비율 준수 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기 산정식을 적용하지 않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최저 층수	최고 층수	비 고	
주 1BL ~ 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공동 1BL		공동주택(아파트)	5	-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2BL 준 3BL(1Lot) 준 5BL(4~5Lot)	-	-	4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	-	10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3BL(1~2Lot) 준 4BL 준 5BL(2~4Lot)	-	-	10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외 기타용도	-	10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 2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준 3 ~ 5BL	-	-	10
준 6BL		-	-	4	
상 1BL		-	3	6	
상 2 ~ 3BL		주거복합, 업무시설	5	-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4 ~ 6BL		업무시설	5	-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7BL		-	-	13m 이하 (100m 이하) 19m 이하 (200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 (장도포대지) 경계

주1)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라)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 고
건 축 한계선	대로 1-20호선 변	1m	○ 전면공지로 조성 ○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 2-74호선 변	2 ~ 3m	
	대로 3-76호선 변	2m	
	중로 1-90호선	2m	
	중로 1-302호선 변	1 ~ 5m	
	중로 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 3-2호선 변	2m	
	소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 2-9, 2-10호선 변	2m	

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주2)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구 분			내 용
저 층 부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으로 처리
		투시형 서터	○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출입구 높이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
옥 상 부			○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불허
공동주택 및 주거 복합용도 건축물			○ 탑상형 ○ 획일적 패턴 지양 및 형태 및 입면상 변화로 조형성 향상

○ 건축물의 외관

구 분	내 용
재료 및 색채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 사용
야간조명	○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물외벽 및 조형물, 보도바닥 등에 조명을 투시하는 야간환경조명 설치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대지 내 공지

구 분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 개선 - 대로 1-20호선 변 : 1m - 대로 2-74호선 변 : 2 ~ 3m - 대로 3-76호선 변 : 2m - 중로 1-90호선 : 2m - 중로 1-302호선 변 : 1 ~ 5m - 중로 2-58, 2-110호선 변 : 2m - 중로(소래) 3-2호선 변 : 2m - 중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 2m - 소로 2-9, 2-10호선 변 : 2m	건축한계선 부분
공개 공지	쌈지형 공지	○ 일반상업용지(상2-1, 상2-2, 상3-1, 상7) : 4개소 ○ 준주거용지(준4-3) : 1개소	위치지정
대지안조정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용지 : 폭 10 ~ 15m(완충녹지)	

주1)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차가 없어야 함

주2) 공지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의 설치를 금함

주3) 대지내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시행

나) 교통처리계획

-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흐름 저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대로 1-20호선 변 대로 2-74호선 변 대로 3-76호선 변 중로 1-90호선 변 중로 1-302호선 변
공공보행통로	○ 준주거용지(준4-3, 4) : 1개소	위치지정

주1)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 옥외광고물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 해당구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향후, 고시 사항에 따라 특정광고물설치기준을 준수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임

경미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②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③ 공공보행통호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